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30

2020년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송재혁 의원(찬성자 22명)

나. 제 안 일 : 2020년 5월 25일

다.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라. 상 정 일 :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혁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는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이 정책과 상이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개편하고 주민자치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런하여 현장의 요구와 변화를 수용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안 제명)
- 나. 기반구축, 활동지원, 중간조직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을 포괄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정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전반에 걸쳐 "만들기"를 "활성화"로 수정함.
- 다. 본칙의 구성 체계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체계(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4장),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5장)으로 구성함.
- 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항에 '그 밖에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바.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2020. 6. 3. ~ 6. 10.)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이 일정부분 정착되었고,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8년~2022년) 기반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조례와 현행 사업간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과 조례안 전반에 규정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로 개정하고,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기능 등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함.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함.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함.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다양성을 존중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함.
제4조(주민의	-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권리와 책무)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제5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제7조(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정책방향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개)	- 매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 -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
제9조(마을공동체위 원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둠.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주택·경제·복지·문화·여성·자치행정 등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함.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
 - 1.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 력을 가지고 있는 자
 -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 견을 갖춘 주민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담당관이 됨.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음.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 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함.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음.
 -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 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함.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함.
-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 원·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 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
 -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 7.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원관리
 -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제3항에 따른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의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 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제10조(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 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가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시장은 제8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9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 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 시장이 제1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제1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 하여야 함. -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및 제11조(마을공동체 자치구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협의회)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 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 지원 3. 환경 · 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주민 건강 및 복지 증진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6. 마을자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 사업 제12조(지원범위) 7. 마을공동체공간의 설치 및 운영 8.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10.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함.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지원신청)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1항의 지원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함.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2제5항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제13조의2(지원사업 선정)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 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함. 이 경 우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제13조의3(보고 등)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 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14조(평가·포상)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시장은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음.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제15조(사업비의 환수)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형성재산의	-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
사용)	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시승)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5.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
	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제17조(설치·운영)	기능을 수행함.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
	여 운영할 수 있음.
	- 기본 6년 ML. -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및 "마을활력소"를 설치·
	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 · · · · · · · · · · ·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서울시는 2012년 3월 동 조례안 제정 이후, 동 조례 제9조¹)와 개별 마을 사업 관련 조례²)를 바탕으로 다양한 마을 사업을 추진 하여 왔음.

사엽명	소관부서			
부모커뮤니티 사업	여성정책담당관			
공동육아	아이돌봄담당관			
아파트마을공동체	공동주택과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시민협력과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정책과			
마을미디어	뉴미디어담당관			
마을기업	사회적경제담당관			
안전마을	안전총괄과			
로컬랩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활력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배움터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학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3.15. 제정안>	<현행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	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
는 사업	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2)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등

○ 또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는 별개로 마을 단위로 시행되는 유사 사업(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마을노무사, 안전마을지킴이, 아이돌봄 등) 들도 조례 제정 등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음.

조례명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마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국은 지역공동체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문화정책과, 에너지시민협력과, 공동주택과, 사회적경제담당관 등이고, 2020년 주요 공모사업은 공동육아, 이파트 공동체, 마을예술창작소 등 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81억 6천 3백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사업 예산 현황〉

○ 공모사업 : 8개 사업(8,163백만원)

(2020.5.기준)

연번	사업명(담당부서)	예산액(백민원)
	공모사업 소계	8,163
1	육아공동체 (아이돌봄담당관)	382
2	아파트 공동체 (공동주택과)	481
3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시민협력과)	300
4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정책과)	889
5	마을미디어 (뉴미디어담당관)	1,500
6	마을기업 (사회적경제담당관)	943
7	로컬랩 (지역공동체담당관)	450
8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3,218

- 마을과 학교 연계: 사업 종료(2017년까지 시행)
- 부모 커뮤니티 사업: 사업 종료(2018년까지 시행)
- 마을작은도서관 지원
- 2012년 시행 이후 마을공동체 사업 유형에서 제외(작은도서관 사업은 현재 서울도서관에서 시행중)
- -마을북카페 조성, 청소년 휴카페
- 2013년까지 시행 후 마을공동체 사업 유형에서 제외(현재는 사업 종료)

나. 세부 내용 검토

- **1) 조례의 제명과 목적 등**(안 제1조~안 제6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명과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용어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 세3소(기본원식) 마을공동제 활성화 사업은 나음 각 호의 기본원식에 따라 수신 하여야 한다.
 -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기본원칙 (안 제3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시장의 책무(안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6조)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12년 동 조례 제정이후, 추진된 제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012년~2017년)의 시행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반은 일정 부부 조성되었다는 판단하에.
-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8년~2022년)에 따라 동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 향후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명과 각 조의 용어(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	제1조(목적)
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	
하는 마을공동체 <u>만들기</u> 를 지원하는데 필요	<u>활성화</u>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	1. (현행과 같음)
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	
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	2. (현행과 같음)
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	
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u>만들기"란</u> 지역의 전통과	3 활동" 이란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	
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u>만들기는</u> 다음 각	제3조(기본원칙) <u>활성화 사업은</u> -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u>만들기는</u> 주민간의 긴밀한 관	1 활성화 사업은
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	
다.	
2. 마을공동체 <u>만들기는</u> 주민의 참여를 기반	2 <u>활성화 사업은</u>
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u>만들기는</u> 주민 및 마을의 개성	3 활성화 사업은
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u>만들기는</u> 주민과 행정기관의	4 활성화 사업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u>마을</u>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마
<u>공동체 만들기</u>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u> 을공동체 활성화</u>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u>마을공동</u>	
<u>체 만들기</u>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	<u>마을공동체 활성화</u>
다.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제5조(시장의 책무)

이라 한다)은 주민의 <u>마을공동체 만들기</u> 사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	
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u>.</u>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u>활</u>
	<u>성화 사업</u> 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만, 2012년 이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마을 사업"이라함)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예산 편성 내역과 타 실국 공모사업 추진 실적 (참고자료 1 연도별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동 사업에 투자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사업 예산 등은 1,865억 7천만원 규모이며, 타 실국의 공모사업 등의 규모는 599억원 수준으로 전체 투자 규모는 2,465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³)되는바,
 - 지금까지의 재원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마을 사업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 주민의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2년~2020년 예산 편성 현황〉								
사업명 및 예산과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186,571백만원							
계	5,482,662	7,590,453	9,876,360	28,167,107	33,488,533	39,929,784	30,408,068	31,628,256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1,350,000	1,552,270	1,699,400	9,451,236	8,854,387	12,805,274	11,731,476	8,591,479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1,289,005	2,744,104	2,965,690	2,024,025	278,885	391,705	403,105	610,800
마 을공동 체종합지원센터 운영	1,353,420	2,820,930	2,630,545	5,197,485	5,218,436	5,656,594	5,481,521	5,296,358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				6,034,856	5,977,800	2,598,000	1,779,180	205,629

³⁾ 기타 추가적인 투자 재원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

사업명 및 예산과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5,064,480	5,770,000	8,476,000	9,800,000
공동체공간 모니터링 연구							50,000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자원 시업								3,542,685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2,788,000	4,000,270	2,802,976		
근린생태계 조성(거버넌스)				690,000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				1,454,000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지원	382,000		526,000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974,000					
주민제안사업 현장 조사	192,000							
마 을공동 체 사례발굴,확산	317,800	259,000	355,000	295,000	15,460			
마을공동체 교육	307,400	184,000	150,000	143,000				
마 을공동 체 아카이브 구축	110,000							
기본경비	31,037	30,149	30,725	27,505	33,915	35,235	38,786	32,163
시민참여예산 소계	150,000	0	545,000	62,000	4,044,900	9,870,000	2,448,000	3,549,142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2,500,000	2,460,000	2,388,000	3,509,142
마을밥상 운영								40,000
을지로 골목 미관 개선							50,000	
사람이 이름다운 약초 만들기							10,000	
마을형 소통문화공간 설치	70,000							
성수동 샘터마을 만들기	80,000							
이웃 나눔 행복빵 굽기			15,000					
마을아!같이살자!			150,000					
600년 느티나무공원과 마을북카페의 아름다운 동행			50,000					
책드림 소통드림 북차북차			300,000					
이이들이 행복한 할목달록 물빛마을 벽화그리기			30,000					

사업명 및 예산과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은천동 휴카페 조성				18,000				
아현동 스토리텔링길 조성				20,000				
원주민과 입주민의 화합을 위한 내곡 행복마을 만들기				19,000				
0세~100세까지 모두가 행복한 겸재 문화로드				5,000				
우리마을 공간조성					36,000			
YouUs 공간 조성					42,000			
합정사랑방 공간 조성					30,500			
깨끗한 마을 조성					5,000			
시민자치학교 지원					5,000			
명륜동과 혜화동 주민모임 지원					9,000			
징검다리 마을학교 지원					102,400			
글로벌인재지원센터 운영					120,000			
오순도순 마을쉼터 조성					40,000			
복합 허브공간 조성					100,000			
마을 사랑방 조성					150,000			
책을 품은 거리 조성					100,000			
마을주도 방과후 맞춤돌봄 마을학교 조성					250,000			
소외된 이웃 찾기					85,000			
우리동네 행복발전소 한울타리 조성					200,000			
주민 문화공간 조성					50,000			
청년 마을 인턴십 프로젝트					220,000			
우리마을 유휴공간, 우리마을 유휴~공간으로!						100,000		
합정동 꾸머 로드						10,000		

사업명 및 예산과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						20,000		
지역기반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30,000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7,050,000		
우리동네 마을밥집 지원						200,000		

〈2012~2020년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사업 예산 현황〉

○ 공모사업 : 총 59,921백만원

(2020.5.기준)

예산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59,921	7,445	9,699	7,851	7,175	6,452	4,484	4,831	3,821	8,163

※ 육아공동체, 아파트 공동체, 에너지자립마을, 마을예술창작소, 마을미디어, 마을기업, 로 컬랩, 마을활력소 등 공모사업 예산임.

-마을과 학교 연계: 사업 종료(2017년까지 시행)

-부모 커뮤니티 사업: 사업 종료(2018년까지 시행)

-마을작은도서관 지원

2012년 시행 이후 마을공동체 사업 유형에서 제외(작은도서관 사업은 현재 서울도서관에서 시행중)

-마을북카페 조성, 청소년 휴카페

2013년까지 시행 후 마을공동체 사업 유형에서 제외(현재는 사업 종료)

- 한편, 제2기 마을 사업의 비전과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핵심가치로는 "사회적 우정, 주민자치, 지속가능, 분권·협치"인바,
- 조례 개정시 기존의 실험적이고, 백화점식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는 사업 추진이 요망 된다고 하겠음.

〈제2기 마을 사업의 비전과 추진과제〉

비전 및 추진과제

비 전

마을과 자치, 시민이 만드는 서울

목 표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생활자치 활성화

핵심가치

사회적 우정

주민자치 :

지속가능 분권·협치

전략과제

연대와 협력의 경험 축적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 주민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추진과제

고 공동체 참여자 확대 · 다양화

① 주민자치회 설립 지원 고등체 자원확보·축적축진

마을 자치통합지원체계구축

 ② 교육을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

2 주민자치회 권한·책임 강화 ② 공동체전문가양성·배치

 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

 ③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③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제시

2)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등(안 제7조, 안 제8조)

○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 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정책방향
 -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개)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마을공동 체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현행 조례 제6조와 제7조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으로.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사항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추가로 명시하며, 서울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은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안 현행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 제7조(기본계획) ① ---- 마을공동체 활성화-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 을공동체 <mark>만들기</mark>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 활성화 -----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 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u>2</u>)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마 1. -----을공동체 <mark>만들기</mark> 정책방향 성화 사업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2. (현행과 같음) 3. 서울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 • 운 <삭 제> 4.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 • 관 협 3. (현행 제4호와 같음) 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 4.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 5. -----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 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기본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개)** ① ------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 ----- 활성화 사

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u>업</u>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u>만들기</u> 지원에	② <u>활성화 사업</u>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1. (현행과 같음)
2. 마을공동체 <u>만들기</u> 사업에 대한 행정·	2 <u>활성화 사업</u>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u>만들기</u> 지원에 필요	3 활성화 사업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③ (현행과 같음)
기본계획 및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u>시행계획과 지원대상·</u>	④ <u>시행계획</u>
<u>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u> 을 서울특별시 홈	<u>3</u>
페이지 등에 <mark>공고하여야 한다</mark> .	개하여야 한다.

- 그 동안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동 사업을 추진해왔고, 제2기 기본계획에도 이미 "주민자치회 설립지원, 주민자치회 책임 강화" 등의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 2019년 주민자치 사업으로 '주민총회' 사업을 추진한바 있음.

〈제2기 마을 사업의 10개 추진 과제〉 □ 4대 핵심가치ㆍ전략, 10개 추진 과제 전략별 추진 과제 구분 추 진 부 서 사회적 우정 - 연대화 협력의 경험 축적 지역공동체담당관 ① 모임형성 지원을 통한 참여자 확대 확대 ① 공동체 참여자 (자치구) 지역공동체담당관 확대·다양화 ② 다양한 참여집단 유입전략 도입 신규 (복지) ①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② 교육을 통한 확대 자치구

			······
생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② 시민 대상 마을공동체 교양강좌	신규	평생하다 자꾸동차류당
	③ 민주주의 시민학습·사회참여모임(동아리) 지원	계속	च्युं प्रमा
	상의 민주주의 실현		
① 주민자치회 설립 지원	① 주민자치위원회를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	확대	자치행정과
② 주민자치회 권한 · 책임 강화	①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주민자치회 사용	신규	자치행정과, 지역공동 체담당관(세제과·예 산담당관)
그림 오퍼	② 주민자치회 주도 지역발전 지원	신규	도시계획과
지속가능 - 공	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	_	
	① 현금 외 공동체 자원, 자부담 인정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
	②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직접지원 다양화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 (일자리)
① 공동체자원확보·	③ 마을활력소(거점형 공동체 공간) 조성 운영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
추적 추진	④ 공동체 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 (시센터)
	⑤ 공동체기금 조성 지원	신규	지치행정과, 지역공동 체담당관
② 정책지원 전문가	① (가칭)마을자치전문가 양성 · 배치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 (시센터)
양성 · 배치	② 마을일자리 창출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 (시센터)
	① 사업종료 후 일상적 활동 지속 지원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구)
③ 역랑장를 위한	② 지역기반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 (시센터)
지원 확대	③ 마을공동체 종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 (시센터)
	④ 전문가 및 단체협력을 통한 컨설팅 전문성 제고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 (시센터)
분권·협치 - 주[민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① 자치구 주도 현장 밀착형 공모사업 추진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 (시센터)
1 마을 자치 통합	② 협력적 정책 추진 활성화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원 체계 구축	③ 市·區 중간지원조직 기능 명확화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 (시센터)
② 마을공동체 지원	① 마을공동체 DB 시스템 개선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구)
사업 연계	②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협력	확대	실·본부·국 사업 부서
③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제시	① 열린육이방 확대로 지역에 공동육아 모델 정착	확대	보육담당관, 지역공동 체담당관
	② 사회문제 해결형 마을공동체 사업 모델 발굴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 지원액: 1.000백만원 ※ '17년 세입결산 기준 동별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 동 평균 38백만원, 최저 20백만원(금호1가동) ~ 70백만원(독산1동)

○ 교 부 액 : 989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성동구 (8개 동)		성북구 (27	내동)	도봉구(67	H 동)	금천	금천구 (10개 동)			
계	228	228 91			246		424				
 동별 지원액	금호1가동 마장동 행당1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행당2동	20 38 12 28 28 38	종암동 동선동	62 29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창2동 창5동 쌍문1동	47 32 44 48 41 34	독산1동 독산3동 시흥1동 시흥3동 시흥5동	70 49 62 20 36	독산2동 독산4동 시흥2동 시흥4동 가산동	37 31 35 36 48	
	용답동 금호2·3가동	26 38									

- ❖ 주민세 개인 균등분 : 매년 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 세 율 : 4,800원(지방세법 : 최대 10,000원,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로 세율 결정)
 - 세 목 : 보통세, 특별시세로 균등분(개인,법인)과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됨

※ 지방세법 개정(2018.12.31.)으로 균등분의 과세기준일 변경(8월 1일 → 7월 1일)

-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사업단은 '17년부터 운영(5명)
- □ 주민총회 개최('19년)
 - 대 상 : 서울형 주민자치회 1·2단계 15개구 80개동
 - 주민자치회 구성 중으로 1개동 제외(종로구 창신3동)
 - **일** 정: '19, 5,10,(금) ~ 10, 3,(수), 5개월
 - 주 관 : 각 동별 서울형 주민자치회
 - 참 석 자 : 동 거주자, 생활주민 총 27,065명(동별 평균 338명)
 - 2018년 주민총회 참석자 총 7,564명(동별 평균 291명)
 - **의결사항** :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주민자치계획(주민세 의제 등) 결정
 - 의결과정 : 의제 공유 → 숙의 → 의결

분과 구성		자치계획 수립	분과의제 조정·숙의		주민총회 (연 1회)
주민자치위원, 주민	ľ	개별 분과(별)	주민자치위원(분과원)	r	희망주민

자치	구(동)	시행동	참석자
		계	27,065
	금천구(10)	가산동, 독산1,2,3,4동, 시흥1,2,3,4,5동	7,718
서울형	도봉구(6)	쌍문1동, 방학1,2,3동, 창2동, 창5동	1,433
주민자치회 1단계	성동구(8)	마장동, 행당제1,2동, 금호1가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용답동	2,746
	성북구(2)	동선동, 종암동	530
	강동구(5)	명일2동, 고덕1동, 천호3동, 성내2동, 길동	1,364
	강서구(5)	등촌2동, 화곡6동, 우장산동, 방화3동, 화곡3동, 성현동	1,128
	관악구(6)	성현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신사동, 서림동	1,465
	노원구(6)	월계1동, 공릉2동, 하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9동	1,526
서울형	동대문구(5)	제기동, 전농2동, 답십리1동, 회기동, 이문1동	1,395
주민자치회	동작구(5)	상도1동, 사당2,3동, 흑석동, 신대방1동	1,149
2단계	마포구(5)	성산2동, 서교동, 용강동, 공덕동 서강동	1,494
	서대문구(5)	천연동, 연희동, 홍제1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1,582
	양천구(5)	신월5동, 목2,3동, 신정3,4동	1,052
	은평구(5)	갈현1,2동, 불광2동, 응암2동, 역촌동	1,982
	종로구(2)	평창동, 혜화동	501

※ 참석자수 : 사전투표자수 + 현장투표자수

□ 주민총회 모니터링('19년)

○ 점검대상 : 서울형 주민자치회 1·2단계 15개구 80개동

○ 점검방법 : 각 동별 총회 일정에 따라 시-중간지원조직 합동 방문

○ 점검내용 : 총회 운영방식, 숙의과정, 투표장식 등 모니터링

- 운영 방식(사전투표 방식, 장소 적정여부 및 선거인과 참석자 구분)

- 숙의 과정(의제설명 방법, 원탁회의 등 의제토론 여부 등)

- 의제 투표방식(사전투표 여부, 온라인·현장투표 등)

- **재원별 사업 선정결과** : 동단위계획형 시참여예산, <u>주민세(개인균등분)</u> 등

- 주민 주도적 행사진행 여부, 주요 질의·제안사항 등

2020년 주민세(개인균등) 자치구별 지원액

자치구	지원대상 예산과목 사업예산		사업예산	(단위:천원)	비고
	계				
157)7	자치단체경상보조		3,522,503	2,935,735	
15개구 80개동		자치단체자본보조	3,044,003	586,768	

강동구	5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242,398	242,398	
70 0 1	3/11/6	자치단체자본보조	242,396	0	
 강서구	5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229,493	187,302	
78/11	J/116	자치단체자본보조	229,493	42,191	
관악구	6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311,712	234,572	
친기	0/11/6	자치단체자본보조	311,712	77,140	
 금천구	10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432,244	245,444	
ㅁ'건ㅣ	10/11/6	자치단체자본보조	402,244	186,800	
노원구	6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268,705	212,405	
그전1	0/11/6	자치단체자본보조	200,703	56,300	
도봉구	6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251,598	243,598	
7-9-1	0/11/6	자치단체자본보조	231,390	8,000	
동대문구	5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183,259	183,259	
5 네닌 I	J/11-6	자치단체자본보조	100,209	0	
 동작구	5개동	5·개도 자치단체경상보조 06.1	261,559	246,672	
071	J/11 6	자치단체자본보조	201,009	14,887	
마포구	5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279,617	223,617	
-11	J/11 6	자치단체자본보조	273,017	56,000	
시대문구	5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162,687	155,687	
기네킨ㅣ	J/116	자치단체자본보조	102,007	7,000	
성동구	8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248,605	218,605	
001	0/11/6	자치단체자본보조	240,003	30,000	
성북구	2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93,000	93,000	
0 1	4/11/6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0	0	
 양천구	5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240,829	208,379	
ठिंदी	0/11/0	자치단체자본보조	240,029	32,450	
은평구	5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257,610	185,610	
L 0 1	0/11/6	자치단체자본보조	201,010	72,000	
종로구	2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59,187	55,187	
っエー	4/11/6	자치단체자본보조	33,107	4,000	
※ 종로구 창	신3동 주민	총회 구성 중으로 제외			

○ 다만, 마을사업에서 주민 총회 등 '주민 자치 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사업과 중복 및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발의되어 주민자치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목적과 범위의 조정 및 현장에서 동 사업 추진시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망 된다고 하겠음.

3) 마을공동체위원회(안 제9조)

- 안 제9조는 마을공동체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현재 마을공동체위원회(참고자료 2 참조)는 현재 23명이며,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은 8명, 남성위원은 9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마을공동체위원회)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 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 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

^{4)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²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주택·경제·복지·문화·여성·자치행정 등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 한 경력이 있는 자
-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담당관이 된다.
 -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⑩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⑩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그 동안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심의기능에 포함 되어 있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임.

현행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

- 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 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 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 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5. 그 밖에 <u>마을공동체 만들기</u>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

개정안

- 제9조(마을공동체위원회) ① <u>마을공동체 활성화</u>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u>마을공동체 활성화</u>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 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5. 그 밖에 <u>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u>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 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등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 명
- 2. <u>마을공동체 만들기</u>와 관련된 비영리민 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 력이 있는 자
-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 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 지고 있는 자
- 4. 그 밖에 <u>마을공동체 만들기</u>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담당관이 된다.
-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주택·경제·복지·문화·여성·자치행정 등 관련 실·본부· 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 2. <u>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u>과 관련된 비영리민 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4. 그 밖에 <u>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u>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담당관이 된다.
-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 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 우
-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

-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 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 한 경우
-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 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 하다.
-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 한다.
 -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 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 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2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 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f)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 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 ③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 5. 14.>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5. 14.>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5. 14.>
-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5. 14.>
- ⑦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14.>

[본조신설 2009. 7. 30.]

- 동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동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이중적인 절차에 해당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오히려 객관적·중립적인 민간위탁 평가기구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요 》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 위 원 :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

▷ 개최주기 : 시의회 개회 1~2개월 전(필요시 수시)

-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주요 심의기능 : 관련 법령·조례·규칙 등에 따라
 -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심의(조례 §5①)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사전 심의(조례 §8③)
 -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적정성 심의(조례 §12)

4)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민간위탁의 근거, 임기,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 평가 연구
-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
-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 7.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원관리
-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의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

- 을 지원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⑨ 시장은 제8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⑩ 제9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 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 ② 시장이 제1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주민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 제22조(종합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종합지원센터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 ②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 · 평가 ·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 • 평가 연구 • 연구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

- 3. 마을공동체의 사업<u>계획 수립·</u>실행 지 원
-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6. <u>마을공동체 만들기</u> 관련 교육·홍보· 전파
-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 8. 그 밖에 <u>마을공동체 만들기</u> 지원에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5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6. <u>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u> 관련 교육·홍보· 전파
- 7.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원관리
- 8. 그 밖에 <u>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u>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의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지원센터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⑧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 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⑨ 시장은 제8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⑩ 제9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6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 ② 시장이 제1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 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동 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인 주민자치단 운영 사업을 수행하면서 신규 사업 신설시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의회의 동의없이 주민자치사업단을 2017년 부터 운영(5명)하여 왔음.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 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 다만,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시설형·사무형의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음.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 ·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 시설/시설, 사무/사무, 시설/사무로 분리시 각각 신규 추진
 - ※ 소관부서가 분리되더라도 위탁사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 되지 않음(다만, 분리된 부서 중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함)
-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 개정조례안은 동 센터가 조례에 근거 없이 수행했던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의회의 심의권을 훼손하는 사업 집행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동 센터의 수행사무 확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은 그간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직접 수행 해야할 사무까지 과도하게 위탁기관에 위임함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과잉 의존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시 마을사업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5) 등은 동 센터에 대한

혁신 앞세운 서울시 '청년공간마을공동체'... 실제 가보니 텅 비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31918791

-헤럴드 경제(2019.11.13.)

왜 서울시 모든 수탁사업은 사단법인 '마을'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13000509,

-고대신문 (2019.05.27.)

마을공동체 활성화 성과 보였지만 … '자립성'은 아쉬워.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0483

-경향신문 (2017/10.01.)

도시 마을공동체, 가능성과 한계점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0011131001

-주간조선(2018.6.11.)

자발적 마을공동체가 희망이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11100009&ctcd=C02

^{5) -}한국일보(2019.3.20.)

평가 및 마을 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다수인바,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시 비판적 시각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동 조례에서 시장이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5년단위 마을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하게 하는 등의 행태는 마을 사업을 주도적,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불성실한 업무행태는 아닌지 여부와 함께 동 사업 중 수탁의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 평가 연구
-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
-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 7.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원관리
-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안 제12조~안15조))

○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범위와 공모사업 지원신청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 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 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 지원
- 3. 환경ㆍ경관의 보전 및 개선
- 4. 주민 건강 및 복지 증진
-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 6. 마을자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 사업
- 7. 마을공동체공간의 설치 및 운영
- 8.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 10.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13조(지원신청)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1항의 지원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2제5항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의2(지원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

- 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의3(보고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비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중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마을학교 운영",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삭제하고,
- "마을자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 사업", "마을공동체공간의 설치 및 운영",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던 것을 "시장"에게 제출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 제12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① 마을공	
마스포	-동체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마을공동</u>	
<u>체 만들기</u>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 <u>활성화</u>	
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	
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①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u>마을</u>	공동
<u>체 활성화</u>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1. (현행과 같음)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기반 경제	세 활
<u>동 지원</u>	
<신 설> 3. (현행과 같음)	
<신 설> <삭 제>	
<신 설> 4. 주민 건강 및 복지 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u>5</u> . (현행 제7호와 같음)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6. 마을자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 사업	
8. 마을학교 운영 7. 마을공동체공간의 설치 및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u>8.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u>	
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9. (현행 제6호와 같음)	
<u>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u> <u>10</u> . (현행 제9호와 같음)	
<u>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u> <삭 제>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u>만들기</u> 에 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나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1 <u>활성화</u>	
는 시원하시 아니안나.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 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0조(지원신청) <제1항 신설>

-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u>시장 또는 구청장</u>은 <u>제1항</u>의 신청서 검 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의2(지원사업 선정) ① 시장은 <u>제10조</u> 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 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u>사업선정심의회의</u>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선정심의회는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 고,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의3(보고 등) <u>마을공동체 만들기</u> 사 업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지원사업 종료

제13조(지원신청)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는 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u>제1항의 지원절차</u>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u>시장</u>
<u>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③ <u>시장은</u>
-지방재정법 제32조2제5항에 따라 지원을
④ 시장은 제2항
<u> </u>
·
제13조의2(지원사업 선정) ① <u>제13조</u>
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u>서울특별시 보조금</u>
심의위원회
<u>.</u>
②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의3(보고 등) <u>마을공동체 활성화</u>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u>시장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마을공동체 <u>만들기</u>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 건을 위반하였을 때
-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u>\ \ \ \ \ \ \ \ \ \ \ \ \ \ \ \ </u>	<u>장에게</u> -	
 제14조(평가·포상) ① (현행과 같	승)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활성화</u>		
제15조(사업비의 환수) (현행과 같		
·		

- "주민 건강 및 복지 증진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지원" 및 "마을자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는 추상적이고, 사업의 범위가 모호함으로 인해 방만한 사업운영 및 보조금 사업의 근거가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참고자료 4 참조)이 발의(이상훈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바, 마을사업과의 중복적인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 효율적인 마을 사업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개정안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3조의 공모사업(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보조사업의 통일적 운영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6) 형성재산의 사용(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16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 재정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 3. 담보의 제공
-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 3. 항공기
- 4. <u>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안 제16조는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으로 '형성재산'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요재산 보다 넓은 범위의 재산으로 보조금 지원으로 조성된 재산 관리의 근거 조항으로 보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을 사업 관련 공모사업 및 자치구에 교부되는 보조금 사업의 규모가 상당한바, 보조금으로 조성된 '형성재산'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중요재산의 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형성재산의 공시와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형성재산의 사용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여 형성재산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감시·감독을 포함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동 규정의 형성재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7)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의 조성(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17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수 있다.
 - 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 5.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④ 시장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동 규정에 따르면, 마을배움터의 기능은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 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이며,

- 현재, 서울시에서는 1개의 마을배움터를 조성하였으며, 추가적인 조성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 시설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307.36m²)

○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31-6(우이동 170-10)

○ 공간구성(안) : 마을학교, 청소년 대안학교(주말학교), 청년 직업체험 카페, 다목적홀





- "마을활력소"의 경우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까지 조성된 마을활력소는 45개소이며, 구체적인 조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26개소)

연번	연도	자치구	행정동	공간명	소재지/사업대상지	소요예산 (백만원)	진행상황
1	2016	강동	성내2동	성내어울터	성내동 43-17, 성 내2동 경로당	1,500	운영중(`18.10월 개소)
2	2018	강동	명일2동	모두마루	강동구 구천면로 502, 2층	50	운영중(`17.6월개 소)
3	2016	관악	삼성동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관악구 신림로 143	396	운영중(`17.9.27. 개관)
4	2016	구로	천왕동	천왕역버들 마을활력소	구로구 오리로 지하 1130, 천왕역	790	운영중(`17.5월 개 소)
5	2018	구로	가리봉동	가리봉동 자치회관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198	1,500	공사중(`20.2월 개소)
6	2017	구로	가리봉동	다붓다붓 마을활력소	구로구 가리봉동 131-49	420	운영중(`18.11월 개소)
7	2017	금천	시흥5동	금천 마을활력소 어울샘	금천구 탑골로 22 (시흥동 247-19)	2,000	운영중(`18.9월 개 소)
8	2017	금천	시흥4동	새재미 마을활력소	금천구 독산로50길 105	200	운영중(`17.6월개 소)
9	2016	노원	상계1동	수락 행복발전소	상계동 996-10,-21	700	운영중(`18.5.17. 개관)
10	2018	도봉	창2동	시끌벅적 마을활력소	도봉구 덕릉로89바 길 21, 덕릉로57길 38-9	500	공사 중(`20.8월 준 공)
11	2018	도봉	창5동	창오랑 마을활력소	창동 224-41	200	운영중(`18.12월 개소)
12	2018	도봉	방학1동	산돌 마을활력소	방학동 697-15	1,900	공사 발주 중 (`20. 6월 준공 예 정)
13	2017	동대문	휘경1동	휘경 아뜰리에 마을활력소	휘경동 267-10, 지하보도	435	운영중(`19.9월 개 소)
14	2017	동대문	회기동	회기한지붕 마을활력소	회기동 60-38, 舊 회기파출소	165	운영중(`18.11월 개소)
15	2018	동작	사당2동	이수 마을활력소	동작대로 27가길 19	320	시범운영중 (20.5월 정식개관)
16	2017	동작	신대방2동	보라매둥지 마을활력소	신대방동 385-16	603	운영중 (18.12월 개소)
17	2016	마포	성산1동	성미산 마을 회관	성산동 250-23, -26	2,771	운영중(`18.7.16. 개소)
18	2016	서대문	천연동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천연동 98-1, 천연가압장	319	운영중(`17.3.8. 개소)
19	2017	성동	사근동	사근동 마을 활력소	사근동길 72	430	운영중(`19.4월 개소)
20	2017	성북	종암동	(가)종암동 문화커뮤니티 공간	성북구 종암동 65-1	2,400	운영중 (`19.12월 개소)
21	2016	성북	길음1동	성북길나랑학교 마을활력소	길음로 144, 길음 중학교,	102	운영중(`18.2월 개소)
22	2016	양천	목2동	청춘마루 마 을활력소	목2동 202-16, 용왕산근린공원 내	150	운영중(`17.6월 개소)

연번	연도	자치구	행정동	공간명	소재지/사업대상지	소요예산 (백만원)	진행상황
23	2016	영등포	대림2동	대림2동 주민 공동이용시설	영등포구 디지털로 37나길 21, 3층	150	운영중(`17.9월 개소)
24	2017	은평	진관동	한옥마을 활 력소	연서로48길 74	180	운영중(`17.1월 개소)
25	2017	은평	역촌동	토정골사랑방 활 력소	역촌동 219-33, 舊 역촌가압장	400	운영중(`18.12월 개소)
26	2018	중랑	상봉1동	마중	망우로55길 19, 2 층	135	운영중(18.11월 개소)

□ 일반(거점형) 마을활력소 (5개소)

연번	연도	자치구	행정동	공간명	소재지/사업대상지	소요예산 (백만원)	진행상황
1	2018	강동	천호1동	강동구 마을활력소	천호동 29-4,29-5	2,325	공사중 (`20.4월 개소예정)
2	2018	송파	거여동	송파구 마을활력소	거여동 196-3,6, 187-42	2,690	설계공모 중 (`21.12월 개소)
3	2019	중랑	망우동	중랑구 마을활력소	중랑구 용마산로 461 (망우동)	2,690	설계 중 (`20.12월 완공 예정)
4	2019	노원	중계4동	노원구 마을활력소	노원구 중계동 606-2	2,690	`20.1월 중 칙공 (`21.6월 개관예정)
5	2019	도봉	쌍문2동	도봉구 마을활력소	쌍문2동 85-38, 85-7 (2필지)	1,700	설계 준비 중 (`21.4월 완공 예정)

□ 찾동 마을활력소 (14개소)

연번	연도	자치구	행정동	공간명	소재지/사업대상지	소요예산 (백만원)	진행상황
1	2018	강북	번3동	어울향기	한천로105길 21	300	운영중 (`19.12월개소)
2	2018	광진	중곡4동	고랑울림	긴고랑로 131	300	운영중 (`19.7월개소)
3	2015	금천	독산4동	독산4동 마을 활력소	금천구 독산로 232	250	운영중 (`15.12월개소)
4	2016	금천	독산1동	맹글맹글	금 천 구 시 흥 대 로 1 2 3 길 1 1	256	운영중 (`17.1월개소)
5	2015	도봉	방학3동	은행나루	도봉구 시루봉로 94	300	운영중 (`16.2월개소)
6	2016	도봉	방학1동	학둥지	도봉구 방학로2길 27	272	운영중 (`17.7월개소)
7	2017	동작	대방동	대방누리마루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	320	운영중 (`18.6월개소)
8	2017	서대문	북가좌1동	나비울	서대문구 수색로 100-55	220	운영중 (`18.6월개소)
9	2015	성동	금호1가동	금호1가동 마을	성동구 행당로 15	290	운영중

연번	연도	자치구	행정동	공간명	소재지/사업대상지	소요예산 (백만원)	진행상황
				활력소			(`16.1월 개소)
10	2016	성동	마장동	함께보고	성동구 마장로42길 11	272	운영중 (`17.5월 개소)
11	2015	성북	동선동	동동마당	성북구 동소문로26길 27	220	운영중 (`16.1월개소)
12	2017	영등포	문래동	문래목화	영등포구 도림로141가길 16	235	운영중 (`18.7월개소)
13	2017	은평	갈현1동	고리마루	은평구 갈현로 301	220	운영중 (`18.6월개소)
14	2019	중구	다산동	다산동 마을활 력소	서울 중구 동호로15길 50	200	공사 준비중

□ 마을배움터

급속한 사회변화와 왜곡된 교육현실에 따라 경쟁 및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청소년, 청년 및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 마을 안에서 보듬고 소통을 통한 건 전한 성장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임.

* 마을배움터 기능

-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배움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발굴
- 청소년, 청년 및 마을주민의 참여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마을활력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 권역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임.

* 마을활력소 기능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만, '마을배움'과 '마을활력'의 공간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각각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또한, 마을 활력 공간인 마을활력소에서 마을의 돌봄, 배움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필요성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을 미디어, 마을예술창작소 등 마을사업의 명목으로 각각 조성되고 있는 공간 및 마을의 돌봄을 해결하고자 조성되는 온마을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기하급수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등과의 통합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을미디어 사업)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공모·선정 : 1개소
 - 연도별 마을미디어 활성화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운영
 - 마을미디어 교육 및 축제 개최, 활동단체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활동단체 모니터링 등
- **마을미디어 활동단체**(거점단체, 복합형, 매체형, 아이템형) 공모·선정: 76개소

구 분	거점단체	매체형	복합형	아이템형
신청자격	마을미디어 활동 지속 5년 이상 단체 (인력 시설 장비 보유)	마을미디어 활동 2년 이상 의 주민 3인 이상 모임(단체)	마을미디어 활동 2년 이하 의 주민 3인 이상 모임(단체)	마을미디어 활동 주민 3인 이상 모임(단체)
내 용	컨설팅 지원형(3) 시설·장비지원형(1)	마을 방송, 마을 신문 등 상시 운영되는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마을미디어 활동 시작을 위한 교육 및 라디오, 영상, 신문 등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특정 콘텐츠에 대한 일회성 제작 또는 단기 프로젝트성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액 (단위:천원)	컨설팅 지원형 38,000 x 3곳 시설·장비 지원형 41,000 x 1곳	10,000~14,000	6,000~8,000	2,000~3,000
지원단체 수	4곳	28곳	30곳	14곳

※ 2019년 사업 기준

〈마을예술창작소 시업〉

일상 속 문화예술공간인 마을예술창작소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함

성 과

- 마을예술창작소 31개소 지원
 - 신규 15개소, 연장 16개소

과 제

- 마을예술창작소 50개소 지원
- 신규 20개소, 연장 30개소

■ 마을예술창작소 간 네트워크 활성화

- 연합공연(10월, 문래공원), 연합전시 및 워 크숍(4회), 신규단체 컨설팅, 운영자 교육

■ 마을예술창작소 대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 마을예술창작소별 교육·컨설팅 확대. 마을예술창작소 대시민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

○ **사업대상** : 신규 및 기존(2~5년차) 마을예술창작소

○ 지원방법 : 심사선정(주민 3인 이상 모임 및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예산 : 700백만원

□ 사업내용

○ 마을예술창작소 50개소 선정·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금액(연)	
신 규(1년차)	프로그램비, 시설비	20개소	최대 13백만원	
연 장(2년차)	프로그램비, 시설비	15개소	최대 15백만원	
프로그램(3~5년)	프로그램비	15개소	최대 10백만원	
※ 2010년 사언 기주				

※ 2019년 사업 기순

〈2020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예산 현황〉

사업명	2020년 예산편성 현황		집행 시기	예산 과목
총 계	5,236,780천원			
	소계 4,612,780천	<u> </u> 원		
-10-1-1	· 부지매입 및 조성	1,949,100천원	2월 7월	시설비
마을활력소 조성	· 시설부대비	4,400천원	7월	시설부대
	• 감리비	14,800천원	7월	감리비
	· 신축, 리모델링, 물품구입	2,600,000천원	4월	자치단체

			7월	자본보조
	·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비	44,480천원	1월 6월	자치단체 경상보조
마을활력소	소 계 120,000천원			
사업비	· 마을활력소 사업비 지원	120,000천원	1월	자치단체 경상보조
온라인	소 계 291,000천원			
프랫폼 구축	· 온라인 플랫폼 구축	149,000천원	2월	전산개발
및 운영	· 온라인 플랫폼 운영	142,000천원	2월	공공운영
마을활력소	소 계 50,000천원			
브랜드 개발	· 브랜드 개발	50,000천원	2월	시설비
	소 계 93,000천원			
공감워크숍	·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공감위	크숍 33,000천원	2월	자치단체 경상보조
	· 거점형 마을활력소 공감워크숍	60,000천원	2월	행사운영
공간탐방	소 계 30,000천원			
프로그램	· 공간탐방 프로그램 운영 용역 3(2월	행사운영	
공동체 공간	소 계 40,000천원			
모니터링	•마을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용역	40,000천원	4월	사무관리

- 또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르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으나,
- 자치구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 사업의 정당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2020년 사업으로 시행하려는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6) 사업의 경우,

⁶⁾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는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많은 역량 있는 마을활동 단체에 마을활력소를 지원하되 시 소유 건물의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장기 임대하는 방식

마을단체 수의계약 근거, 일부 수의계약시 장기적 사용 가능, 수익활동 가능 근거, 행정재산 전대 등을 통한 마을활력소의 새로운 운영 방안 등을 모색 중인바, 법과 조례를 넘어선 사업 운영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 단체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특혜성 사업의 우려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을활력소 구분〉

ㅇ 싫	마을공동체형	자치구 거점형	찾동	
유 형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마을활력소	
	누구나 언제나	자치구에 있는	동주민센터 공간	
정 의	주민이 함께	마을공간을 진단하고	일부를 주민과 행정이	
	운영하는 마을공간	지원하는 공간	함께 운영하는 공간	
장기운영	마을대표단체애서 운영	자치구 마을자치 협력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방향	(마을자산으로 전환)	및 공론장 운영		
운영주체	1차) 주민모임	기러 그 이 이 기러 게임	1차) 마을계획단	
	2차) 마을대표단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2차) 주민자치회	
운영방법	직영 · 민간위탁 · 임대	nl əl ol el.	직영 · 민간위탁	
	(주민자율운영)	민간위탁	(주민자율운영)	
			-	
공간규모	500㎡ 미만	500 <i>m</i> ²이상	500㎡ 미만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자치센터 사무실,	지역특성에 맞는	
공간구성	공간(놀이터, 공유부엌,	강당(교육용, 행사용),	공간(놀이터, 공유부엌,	
	스튜디오, 개방공간 등)	개방공간 등	스튜디오, 개방공간 등)	
공간 마련	민간공간 매입/기부채납, 공유지를 대상으로 도즈미 센티 그			
방법	리모델링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 2020년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선정결과 〉

유형	연번	선정결과	단체명	비고
매입형	1	최종선정	건강한 농부(금천)	
	2	최종선정	함께크는 공동육아(서초)	
	3	예비선정	도토리집 공동육아(강북)	
리모델링형	4	조건부 선정	길음예술사랑방(성북)	
	5	조건부 선정	종해문화진흥원(강서)	

〈마을활력소 조성 과제〉

과	제명	과제 선정사유	내 용	비고
단기과제 장기과제	장기 사용	주민이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u>마을활동이 장기</u> <u>축적</u> 되는 공간운영 환경 마련	 • 민간위탁: 5년 마다 갱신 - 수의계약시 장기적 사용 가능 ⇒ 주민사용 편의성 확보방안 건의 • 사용허가: 5년 마다 갱신 - 일부 수의계약시 장기적 사용 가능 ⇒ 마을단체 수의계약 근거 마련 	`20년 상반기
	수익 활동	공간운영을 주민이 <u>독립</u> <u>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u>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사용료 면제(건의), 감면(근거마련) ・민간위탁: 단체장 승인으로 가능 ・사용허가: 목적에 맞는 활동을 원칙으로 수익활동 가능 → 수익활동 가능 근거 마련 	`20년 상반기
	전대	공간을 마을에 있는 <u>주민</u> 모임이 함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마 런 필요	 • 민간위탁: 단체장 승인으로 가능 • 사용허가: 금지를 원칙으로 함 - 지침에는 전대 불가, 법령상에는 관련 규정 없음 ⇒ 행정재산 전대 가능방안 건의 	`20년
	마을 자산	재산을 마을명의로 해서 지역에서 <u>자율적으로 사용</u> 할 수 있는 권한 확보	 ・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마을회관과 같은 마을공간 조성 지원 - 마을단체 명의 마을공간 조성 ⇒ 마을단체에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21년
	재정 지원	필요한 마을활동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보충적 지원환경 마련	 ・마을에서 토지, 건물 등 매입시 도 움 역할을 하는 <u>재정제도 마련</u> ⇒ 대출지원, 이자지원, 기금조성 등 	`22년
	공간 총괄 지원	수익활동, 공동체 활동 등 지속가능한 마을활동이 될 수 있게 <u>마을공간 전</u> 문 지원기관 육성	 ・마을공간을 조성하고 성장 및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마을활력소를 총 괄 관리 운영하는 기관 육성 ⇒ 마을공간 총괄 전문기관 지원근거 미련 	`22년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6. 토 론 요 지: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 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정책방향
 -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개)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 · 재정적 지원
-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

- 제9조(마을공동체위원회)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 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주택·경제·복지·문화·여성·자치행정 등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담당관이 된다.
-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⑩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

집한다.

-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6)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 · 평가 · 연구
 -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
 -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 7.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원관리
 -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의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

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⑧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⑨ 시장은 제8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⑩ 제9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 ② 시장이 제1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제12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 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 지원
 - 3. 환경 · 경관의 보전 및 개선

- 4. 주민 건강 및 복지 증진
-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 6. 마을자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 사업
- 7. 마을공동체공간의 설치 및 운영
- 8.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기관 지원
- 10.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13조(지원신청)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실 시할 경우에는 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1항의 지원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2제5항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의2(지원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의3(보고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비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6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 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

- 제17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 5.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